

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75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11.18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 합회 민원사항 해결 - 각종 수수료, 사용료, 진료비 등 감면 관련 조례 개정 요구
-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중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포함하여 보훈대상자 지원 형평성 제고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·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자 정비

□ 주요내용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· 시행에 따른 감면대상자 정비(안 제9조)
-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중복 기재 대상자 삭제(안 제9조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 대상자 항목 삭제
-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 추가(안 제9조)

□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5.10.08.~10.28

□ 개정조례안 : 불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3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
-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, 제3조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
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
-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
- 현행조례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4

- 안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제정 계획 방침결정문

< 볼임 1 >

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7호 중 “수급권자” 를 “수급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보건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보건행정과장 김재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진료검사계장 김경숙
	담당자 성명·전화	조금옥 (행정 2562)

< 볼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안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1급 내지 3급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</u></p> <p>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의 2세환자,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,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</p>	<p>제9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....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안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1급 내지 3급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수급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</u></p> <p>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진료비 중 <u>본인부담금</u></p>

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2755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12월 9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함에 있어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하여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정함

□ 주요내용

- 안 제9조 8호를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정함

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안 제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8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 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7. 안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1급 내지 3급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</p> <p>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의 2세환자,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,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</p>	<p>제9조 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 ----- -----. 1.~6. (현행과 같음) 7. 안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1급 내지 3급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<u>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, 「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</u></p>	<p>제9조 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 ----- -----. 1.~7. (개정안과 같음) <u>8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</u></p>